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	020. 6. 24.0	(수) / (침	흥 20매)
중앙방역대책본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370
총괄팀	담 당 자	신 규 호	화 긴	043-719-93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8	추게		결과	양성	게비즈	거리 이서	
구분	총계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6. 23.(화) 0시 기준	1,196,012	12,484	10,908	1,295	281	22,278	1,161,250
6. 24.(수) 0시 기준	1,208,597	12,535	10,930	1,324	281	20,245	1,175,817
변동	(+)12,585	(+)51	(+)22	(+)29	(2)	(-)2,033	(+)14,567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 북	전남	경 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1,324	488	7	27	158	1	49	6	2	353	8	6	16	5	2	11	9	4	172
격리해제	10,930	747	142	6,687	174	32	44	48	47	761	52	56	146	20	18	1,321	124	15	496
사망	281	6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535	1,241	152	6,903	333	33	94	55	49	1,137	63	62	162	25	20	1,386	133	19	668
지역발생(잠정)	31	11	0	0	3	0	8	2	0	5	1	0	1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20	0	2	2	0	0	0	0	0	2	0	0	0	1	0	1	0	0	12
신규	51	11	2	2	3	0	8	2	0	7	1	0	1	1	0	1	0	0	12

^{*6}월 23일 0시부터 6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 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6월 2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05명*이 확진되었다.
 - * (구분) 방문자 41, 접촉자 164 (지역) 서울 117, 경기 57, 인천 24, 강원 4, 충남 3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 * (구분)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6.15일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 (구분) 방문자 31명, 접촉자 27명 (지역) 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구분	소재지	확진자 수
힐링랜드 23		7
자연건강힐링센터	대전 서구	4
가거라 통증아	네인 지구	4
홈닥터		15
가족 및 기타 직장		28
누계		58











□ 6월 2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24 0시 기준) >

				유입-	국가	확인	단계	단계 국			
구분	합계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0	1	16	1	1	1	0	12	8	9	11
누계	1,491	20	363	505	584	18	1	656	835	1,198	293
T /1	1,491	(1.3%)	(24.3%)	(33.9%)	(39.2%)	(1.2%)	(0.1%)	(44.0%)	(56.0%)	(80.3%)	(19.7%)

-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냉동어선) 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국적, Ice crystal호)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 (구분) 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선원 1명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 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 (격리해제 기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다.

<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

 \Rightarrow

 \Rightarrow

개정 전 (무증상자)

-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개정 후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 ① **(암성화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❷(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 ①(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②(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 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일명 '떳다방'), 사업설명회 등 유인·집합·판매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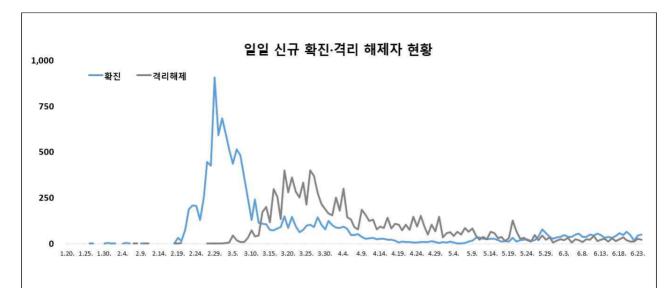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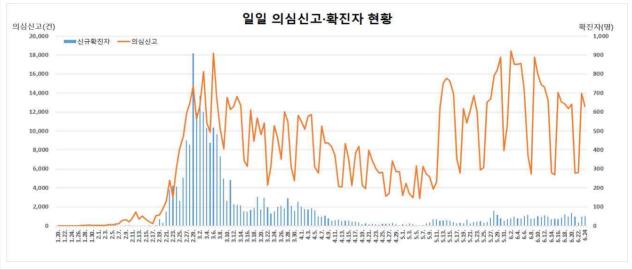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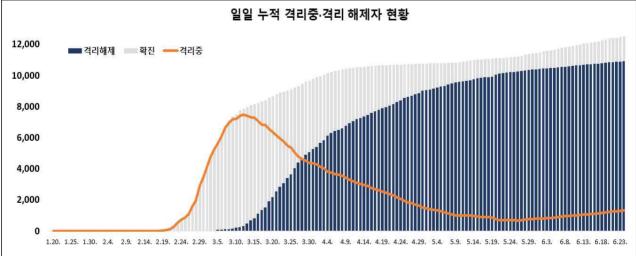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화진자 일별 추세 (6.24. 0시 기준, 12,535명)

















②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6.24. 0시 기준, 12,535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1,241	(9.90)	12.75
부산	152	(1.21)	4.46
대구	6,903	(55.07)	283.32
인천	333	(2.66)	11.26
광주	33	(0.26)	2.27
대전	94	(0.75)	6.38
울산	55	(0.44)	4.79
세종	49	(0.39)	14.31
경기	1,137	(9.07)	8.58
강원	63	(0.50)	4.09
충북	62	(0.49)	3.88
충남	162	(1.29)	7.63
전북	25	(0.20)	1.38
전남	20	(0.16)	1.07
경북	1,386	(11.06)	52.06
경남	133	(1.06)	3.96
제주	19	(0.15)	2.83
검역	668	(5.33)	-
총합계	12,535	(100)	24.18

-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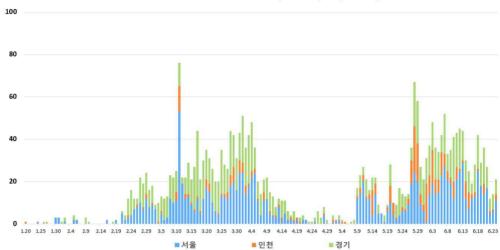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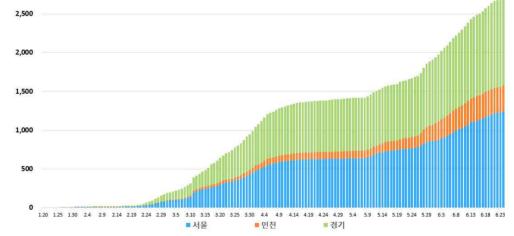
수도권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명, 확진(보고)일 기준)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수도권지역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명, 확진(보고)일 기준)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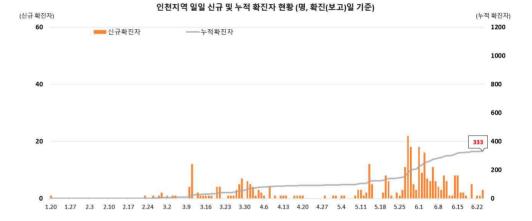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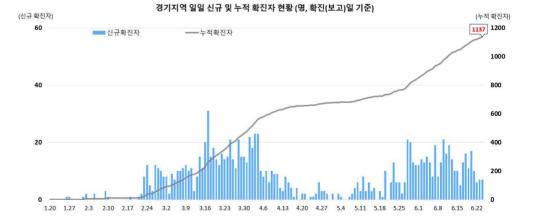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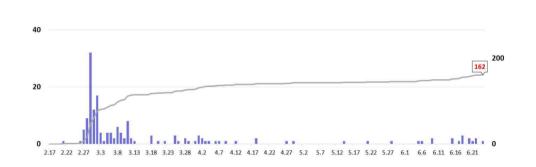


충남지역 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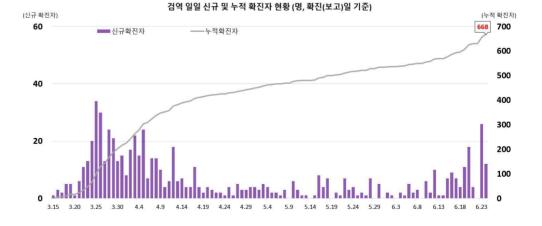
-----신규확진자



충남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누적확진자

검역 확진자 현황









(누적 확진자)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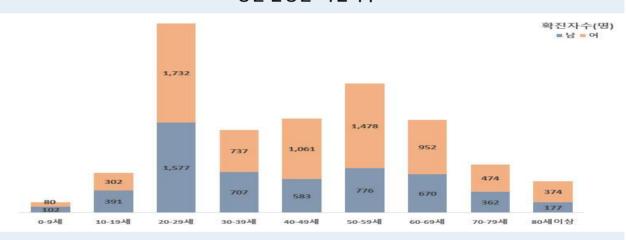
③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6.24. 0시 기준, 12,53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2,535	(100)	281	(100)	2.24
성별	남성	5,345	(42.64)	150	(53.38)	2.81
o ≥	여성	7,190	(57.36)	131	(46.62)	1.82
	80세 이상	551	(4.40)	139	(49.47)	25.23
	70-79	836	(6.67)	81	(28.83)	9.69
	60-69	1,622	(12.94)	41	(14.59)	2.53
	50-59	2,254	(17.98)	15	(5.34)	0.67
연령	40-49	1,644	(13.12)	3	(1.07)	0.18
	30-39	1,444	(11.52)	2	(0.71)	0.14
	20-29	3,309	(26.40)	0	(0.00)	-
	10-19	693	(5.53)	0	(0.00)	-
	0-9	182	(1.45)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



< 연령별·주별 확진자 현황 >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 위중·중증환자 현황 >

구분	6.11일	6.12일	6.13일	6.14일	6.15일	6.16일	6.17일	6.18일	6.19일	6.20일	6.21일	6.22일	6.23일	6.24일
계	20	18	22	22	20	24	25	27	33	33	34	34	37	38
중증	8	6	11	10	10	15	15	16	21	17	17	17	18	17
위중	12	12	11	12	10	9	10	11	12	16	17	17	19	21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38	17 (100.0)	21	(100.0)
80세 이상	7	1 (5.9)	6	(28.6)
70-79세	12	6 (35.3)	6	(28.6)
60-69세	11	6 (35.3)	5	(23.8)
50-59세	5	1 (5.9)	4	(19.0)
40-49세	1	1 (5.9)	0	(0.0)
30-39세	2	2 (11.8)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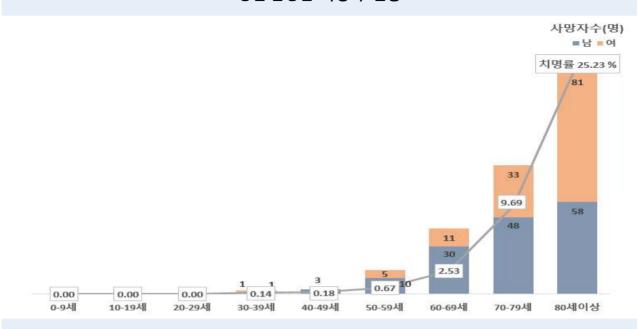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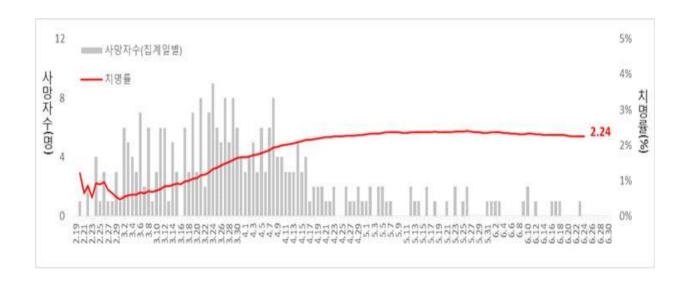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 일별 사망자 현황 >













4 감염경로

				호	진환지	•				
지역		해외		집딘	<u></u> 발생 판	<u></u> 관련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17	누계	유입	소계	신천지 관 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 련	기타	신규	T
서울	1,241	293	853	8	750	26	69	95	11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2),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8), 구팡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대전 방문판매 관련(4) 등
부산	152	34	88	12	57	18	1	30	2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 등
대구	6,903	37	6,121	4,511	689	917	4	745	2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 (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 등
인천	333	54	268	2	251	7	8	11	3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 터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 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 등
광주	33	16	17	9	1	1	6	0	0	
대전	94	15	67	2	56	9	0	12	8	대전방문판매 관련(42), 꿈꾸는교회 관련(4) 등
울산	55	22	25	16	3	3	3	8	2	
세종	49	4	44	1	40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경기	1,137	229	832	29	680	60	63	76	7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 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 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행복한요양 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한국대학 생선교회 관련(7),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6)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 등
강원	63	16	40	17	23	0	0	7	1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라자웨이 관련(4), 금천구 도장/회사 관련(2) 등
충북	62	10	42	6	27	7	2	10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 등
충남	162	14	136	0	133	2	1	12	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8), 리치웨이 관련(3) 등
전북	25	12	8	1	7	0	0	5	1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전남	20	12	5	1	1	2	1	3	0	
경북 	1,386	19	1,234	566	478	190	0	133	1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등
경남	133	23	90	32	50	6	2	20	0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 등
제주	19	13	2	0	1	0	1	4	0	
검역	668	668	0	0	0	0	0	0	12	
합계	12,535 (%)	1,491 (11.9)	9,872 (78.8)	5,213 (41.6)	3,247 (25.9)	1,251 (10.0)	161 (1.3)	1,172 (9.3)	51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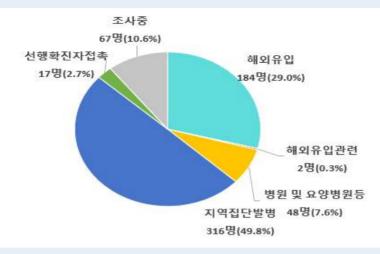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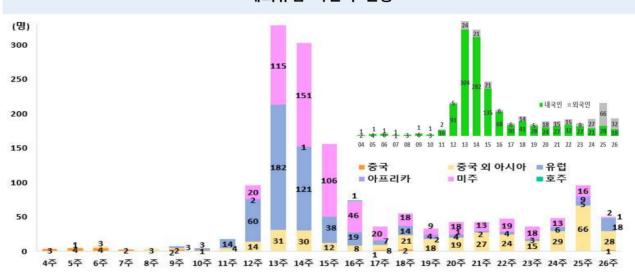




< 최근 2주간 (6.10일 0시~6.24일 0시까지 신고 된 634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확진자수(명	∄)	여행국
중국	20	-
중국외아시아	363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유럽	505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	18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미주	584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호주	1	호주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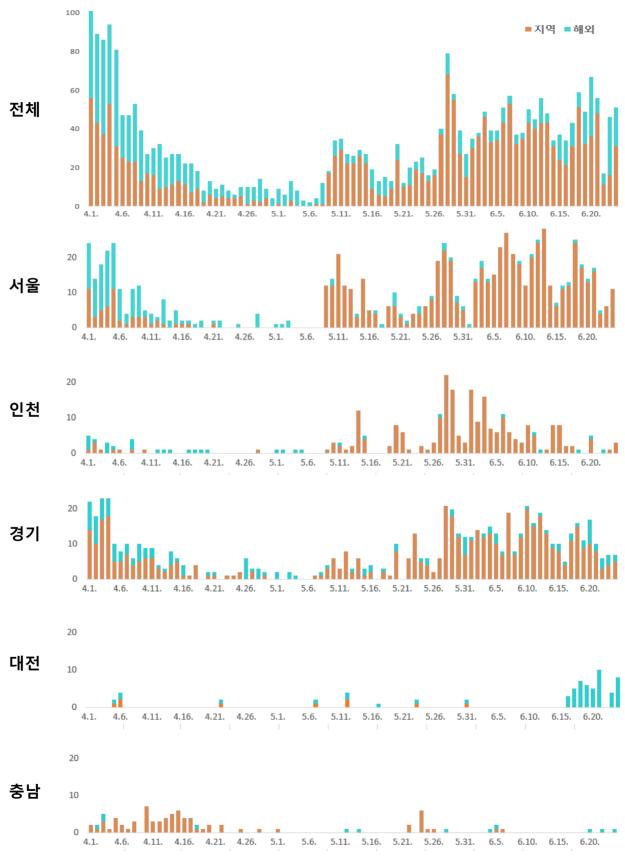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단위: 명>

	확진	!자	사!	강자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누적	신규	누적	신규	(%)	발생자 수*
미국	2,342,739	36,492	121,157	773	5.2	711.9
브라질	1,145,906	39,436	52,645	1,374	4.6	539.5
러시아	599,705	7,425	8,359	153	1.4	416.8
인도	440,215	14,933	14,011	312	3.2	32.2
영국	306,210	921	42,927	280	14.0	457.0
페루	260,810	3,363	8,404	181	3.2	792.7
칠레	250,767	3,804	4,505	3	1.8	1338.9
스페인	246,752	248	28,325	1	11.5	531.8
이탈리아	238,833	113	34,675	18	14.5	403.4
이란	209,970	2,445	9,863	121	4.7	253.6
독일	192,480	712	8,914	15	4.6	233.6
멕시코	191,410	6,288	23,377	793	12.2	144.7
터키	190,165	1,480	5,001	27	2.6	229.1
파키스탄	185,034	3,946	3,695	105	2.0	90.4
방글라데시	115,786	3,480	1,502	38	1.3	71.7
중국	83,430	12	4,634	0	5.6	5.9
인도네시아	46,845	954	2,500	35	5.3	17.4
싱가포르	42,432	119	26	0	0.1	719.2
필리핀	30,682	630	1,177	8	3.8	28.4
일본	18,024	56	963	8	5.3	14.2
말레이시아	8,587	15	121	0	1.4	26.4
태국	3,156	5	58	0	1.8	4.6
베트남	349	0	0	0	0.0	0.4
대한민국	12,535	51	281	0	2.2	24.2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 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